

LPG공급방식 개선대책

- 체적판매제 활성화 방안 -



윤 범 식

〈통상산업부 액화석유가스과 행정사무관〉

1. 배경

'80년대 후반 LNG도입 이후 도시가스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가정·상업용의 상당부분이 LPG용기에 의한 중량거래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LPG 중량거래방식은 고무호스 등의 간단한 사용설비만을 갖추고 가스 소진시마다 주문, 배달된 가스무게에 의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LPG 도입기인 60년대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그러한 공급방식의 특성상 도시가스에 비하여 편의성이나 안전성면에서 크게 뒤떨어져 LPG소비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체적단위거래는 도시가스와 같이 고무호스 대신 강관으로 배관을 하고 계량기를 통과한 양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LP가스 사용자도 도시가스 사용자와 동등한 연료생활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새로운 가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체적판매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2. 현행 LPG 판매관행 및 문제점

(1) 현황

1983년 12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정시 LPG거래는 중량판매방식 또는 체적판매방식 중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거래하도록 하였으나, 동법 제정 이전부터 중량판매의 관행화와 체적판매에 관한 홍보 부재로 중량판매방식이 일반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95년도의 가스거래형태별 공급비중을 살펴보면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의 경우 1,328만 가구중 약 65%가, 상업용의 경우에는 91%인 456천개소가 중량단위거래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스거래 형태별 공급비중('95년)

가스용도	단위	계	중량거래		체적거래		
			(가스판매사업)	%	도시가스	집단공급	%
가정용	가구수 (천개소)	13,282	8,660	65	4,272	350	35
상업용	업소수 (천개소)	503	456	91	47	-	9

(2) 중량판매제의 문제점

중량판매제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량(Kg)단위로 거래함으로써 소비자는 가스 구입시 정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가스 소진시마다 가스사용을 중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주문하여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며, 판매사업자의 경우는 가스배달 주문의 편중(아침, 저녁 취사시간대)으로 배달인력의 합리적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배달인력의 확보조차도 곤란한 실정이다.

둘째, 사용설비의 취약성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중량판매는 가스용기와 연소기를 연결하는 고무 호스의 열화나 이탈가능성으로 항상 가스누출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특히,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상가 밀집건물 등은 다수 용기와 고무호스가 혼재 되어 그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거래의 1회성으로 인해 소비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는 주로 가격경쟁에 치중하고 법적 의무인 소비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기타 서비스는 무시 내지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때 중량판매제는 소비자에게 불신, 불편, 불안등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판매사업자에게는 합리적 경영이나 서비스 안전점검 등을 제약하고 있는 등 LPG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체적판매제 도입의 기대효과

체적판매제는 앞에서 본 중량판매제가 갖고 있는 정량시비문제, 사용중 중단 재주문, 잔가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문제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취사·조리용에 한정되던 용도에서 급탕, 난방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가스보다 훨씬 높은 열량으로 가스 사용시간의 단축등 LPG만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어 LPG사용자도 도시가스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판매사업자는 체적판매를 할 경우 2개 이상의 용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사용량 점검으로 계획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배달인력 감소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와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되므로 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나아가 적정한 안전점검등의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어 판매사업 기능중 배달과 안전점검기능이 자연적으로 분화되어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스계량기에 안전기능(가스누설시 자동차단)을 추가한 가스미터기를 개발보급할 경우 가스안전사고를 대폭 축소할 수 있으며, 통신기능까지 부가할 경우 소비자의 가스안전상태를 24시간 원격 집중감시함으로써 가스사고 우려를 완전불식시킬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70년대초에 소비자단체가 중량판매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체적판매제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사업자들에게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법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체적판매제로 전환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가스계량기에 각종 안전기능을 추가한 가스미터기(소위 마이콤미터) 보급을 추진, 100% 보급완료함으로써 L.P가스 사고를 년 1000여건에서 50-70건 수준으로 낮추었으

며 최근에는 사고 발생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집중감시 시스템이라하여 24시간 가스누설 기기의 이상등을 체크, 통제하는 방식을 도입중에 있다.

4. 체적판매제 활성화방안

〈기본방향〉

- 체적판매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이를 법적 의무화 함.
- 다만, 기존 주택의 경우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어 이의 실시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 '96-'97간 시범보급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조기 정착 유도

체적판매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첫째, 현행의 임의적 참여에서 의무적 참여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의 주택과 식품접객업소는 '97년 1월부터, 기존 공동주택은 '99년 1월부터, 기존 단독주택은 2001년 1월부터 의무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개발대상주택등 한시적 소비자 및 이동식 연료용, 기타 체적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의무화대상 및 실시시기

가정용		상업용	
대상	실시시기	대상	실시시기
• 신규 주택	'97.1	• 신규 식품접객업소	'97.1
• 기존 공동주택 - 다세대, 연립, 아파트	'99.1	• 기존 식품접객업소	'98.1
• 기존단독주택	2001.1		

둘째, 판매사업자의 투자보장과 기존 소비자의

배관시설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토록 하고 투자사업자에게 일정기간 (3년) 계속 공급권을 보장하며, 계속 공급권이 보장된 기간중 공급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배관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판매사업자의 투자비의 원활한 회수를 보장토록 할 계획이다.

셋째, 기존 LPG소비처에 대하여 금년부터 체적판매의 의무화 실시이전인 '97년까지 2년간에 걸쳐 전국의 읍·면·동별 1개소씩(50세대 기준)을 선정, '96년중 180억원을 지원하여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보급사업 대상으로는 체적판매 효과가 큰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시장, 군수가 대상주택 및 시범판매사업자를 선정토록 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관리 기금 또는 에너지특별회계 자금에서 시설비 등 사업비를 저리용자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96년 시범보급사업은 총 사업계획개소 3,800개 읍·면·동 중 약 1/2인 1,800개소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97년중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LPG판매질서의 확립을 위해 체적판매제의 조기 정착과 LPG연료의 특수성을 감안,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와 안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구역 이외에서의 판매행위 제한 등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지원, 관련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체적판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1세기의 새로운 LP가스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체적판매제의 조기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정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체적판매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 하겠다. ♣